

『서울특별시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
일부개정조례안』에 대한
제안설명

□ 존경하는 김혜련 위원장님!

그리고 선배·동료 의원님 여러분!

안녕하십니까?

더불어민주당 송파구 제5선거구 출신 이정인 의원입니다.

『서울특별시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
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

□ 지금부터 『서울특별시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
일부개정조례안』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
□ 먼저 조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,
조례에서 위원회 위원의 해촉 사유로 “정신장애”를 들고 있는바, 단순히 정신적 장애를 해촉 사유로 규정하여

장애에 대한 편견과 차별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므로, 이를 개정하려 합니다.

- 다음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,
안 제5조제1호 “정신장애” 를 “장기간의 심신쇠약” 으로 변경하였습니다.

- 존경하는 김혜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!
본 의원은 조례 개정 과정에서 해당 부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관련 사항을 마련하였고, 입법예고 등 조례 개정
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준수하였습니다.

-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
본 의원의 조례 개정 취지를 이해하셔서 보건복지위원님
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, 이상 조례 제안설명을
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